



제 430회 국회 (임시회)
제 7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무원의 치유휴직 확대 적용, 질병휴직에 관한 특례 등〉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70호)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47호)

2025. 12.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임종수

목 차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2212170)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2215147)	2
I. 제안경위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5
1. 공무원인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휴직제도 보완(백선희의원안 제 14조 및 제15조, 손명수의원안 제15조의2 신설)	5
2.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전(백선희의원안 제15조의2 신설)	15

□ 백선회의원 대표발의(221217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선회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14.
3. 회 부 일 : 2025.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4월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 지원방안의 하나로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치유�휴직’ 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참사 피해자 중에는 민간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역의 국민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치유툄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221514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손명수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2. 11.
3. 회 부 일 : 2025.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이하 “12·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이후 신속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지난 4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근로자 치유휴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특별법에서 치유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휴직을 주저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

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무원인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휴직제도 보완(백선희의원안 제14조 등, 손명수의원안 제15조의2 신설)

개정안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휴
직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치유�휴직을 공무
원에게도 확대 적용하거나(백선희의원안 제14조 등),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 질병휴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손명수의원안 제15조의2 신설)

[illegible]

현행	백선회의원안	손명수의원안
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5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 ② (생략) <신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치유휴직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3.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한 경우 ②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을 위하여

현행	백선회의원안	손명수의원안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가. 검토의견

1) 제안 배경

현행법(2025년 6월 시행) 제14조에서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치유�휴직”제도를 두고 있으며,¹⁾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총 1년의 치유�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
- 1) 제14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15조(근로자의 치유큐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큐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질병에 대한 휴직³⁾이 체계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량과 기업 여건에 따라 휴직 여부가 결정되는 등 치료와 회복을 위한 휴직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피해자에 해당하는 민간 근로자의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치유 지원 시스템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여 실질적인 휴직을 보장하는 측면의 의의를 가짐.

그런데 참사 피해자 중에는 민간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역의 국민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개정안들은 이러한 치유휴직 제도가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 질병휴직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임.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이에 공무원인 피해자에 대한 휴직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백선희의원**안은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치유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손명수의원**안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의 질병휴직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질병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2) 백선희의원안 : 공무원의 치유휴직 확대 적용

먼저,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치유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백선희의원안은 공무원인 피해자에게도 이 법에 따른 **휴직 기회**를 보장하고, 피해자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⁴⁾,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장된 “**질병휴직**”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데, 질병휴직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치유휴직(최대 1년)보다 휴직 가능 기간이 길어서(동일질병 최대 2년, 횟수 제한 없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이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복직 후 새로운 질병휴직이 부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현행법에 따른 치유휴직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 공무원 질병휴직은 별도의 신청 기한 없이 공무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하는 직권휴직이라는 장점도 있음.

【 현행법의 치유휴직과 공무원 질병휴직 비교 】

구분	근로자 치유휴직	공무원 질병휴직
근거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등
요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서 근로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필요
신청 기한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 (소견서가 있는 경우 3년 이내)	별도의 신청기한 없음
휴직기간	최대 1년 (6개월 이내 원칙 + 6개월 이내 연장)	동일질병 최대 2년, 횟수 제한 없음 (복직 후 새로운 질병휴직 부여 가능)
휴직 중 급여	지급여부 및 비율은 사업장마다 상이 단, 사업주가 치유휴직 기간에 치유휴직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 보전	1년 이하 :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 : 봉급의 50%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또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질병휴직은 휴직자의 결원보충⁵⁾, 업무대행 지정⁶⁾이 가능하나, 치유휴직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휴직에

5)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6)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해당되지 않아 결원보충 및 업무대행 지정 등이 불가하여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및 인력관리, 업무공백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 감소 측면에서도 질병휴직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공무원에 대한 치유�휴직 확대 여부는 치유�휴직과 대비되는 질병휴직의 장점과 공공부문의 실제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도 근로자와 같이 휴직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질병휴직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현행법과 같이 치유�휴직의 범위를 근로자로 보고 있음.

구분	현행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치유툽직의 범위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신청기한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청, 다만 소견서가 있는 경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신청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신청
치유툽직의 기간	최대 1년 (6개월 이내 + 6개월 연장)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손명수의원안 : 공무원의 질병휴직 제도 개선

손명수의원안은 현행법에서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에 대응하여, 질병휴직 기간을 경력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질병휴직으로 인한 승급, 승진연수, 경력평정 산정 시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의 질병휴직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현행 질병휴직 제도를 피해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일반 질병휴직 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실제로 직무에는 종사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않고,⁷⁾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에서 제외되며,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력

7)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4급 및 5급: 3년 이상

나. 6급: 2년 이상

다.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2. 우정직공무원

가. 우정2급: 3년 이상

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1년 6개월 이상

다. 우정7급, 우정8급 및 우정9급: 1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질병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평정의 대상 기간에서도 휴직기간은 제외되고,⁹⁾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휴직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빼도록 하고 있어 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불이익한 측면이 있음.¹⁰⁾

이 외에도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인하여 근무실적이 없거나 부족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서의 불리한 처우, 전보 및 보직 배치 시

1.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경력평정의 대상)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 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경력평정의 대상기간)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

10)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⑤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됨에 따른 휴직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
5.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불이익 등 이 법에 따른 피해자가 질병휴직을 사용함에 따라 기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 종사 기간으로 간주하고,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법령상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유가족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나. 정부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공무원은 장기요양을 위한 질병휴직이 이미 법제화되어있어 백선희 의원안에 대해서는 치유�휴직 확대의 실효성, 실현가능성 등의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인 공무원이 현행 질병휴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질병휴직 제도를 보완하는 손명수의원안에 동의함.

2) 인사혁신처 의견

치유툅직은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에 해당되지 않아 6개월 이상 휴직자의 결원보충이 불가하고, 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이 불가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전(백선회의원안 제15조의2 신설)

백선회의원안은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이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2(영업손실의 보전)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이하 “영업중단”이라 한다)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영업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영업중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영업중단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영업중단 및 영업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에 관한 신청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공무원·근로자인 피해자들과 같이 자영업자인 피해자도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영업 중단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자영업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위해营业을 중단할 경우 즉각적인 소득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유사 입법례로서 치유를 위한 영업 중단에 대해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의 형평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정부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전은 그간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산권 제약에 한정하여 적용된 손실 보상 사례와의 형평성, 객관적 영업손실 산정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영업자 피해자의 경우

업종별·개인별로 필요한 지원사항이 상이하여 금융·법률·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 기획재정부 의견

손실보상은 코로나19 영업제한과 같이 국가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사인의 재산권에 불가피하게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며 특별법 제정 시에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으로 문구가 반영되었음. 한편, 이태원 및 세월호 참사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에도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